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2424
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23. 11. 27.
제안자 : 복지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장수축하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장수축하금을 95세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 제2조 제1호 90세를 95세로 변경
- 나.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90세를 95세로 변경
- 다. 부칙 「지급에 관한 적용례」 신설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90세”를 “95세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1회에 한정하여 90세”를 “1회에 한정하여 95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90세”를 “95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90세 및 100세”를 “95세 및 100세”로 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급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,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장수어르신”이란 주민등록상 <u>90세</u>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 <u>95세</u> ----- 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지급금액)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<u>90세</u>에 10만원 이내, 100세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지급금액) ----- ----- <u>95세</u>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신청안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<u>90세</u> 및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신청안내) ----- ----- <u>95세</u>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신청 및 지급방법)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<u>90세</u> 및 <u>100세</u>가</p>	<p>제6조(신청 및 지급방법) ① ----- ----- <u>95세</u> 및 <u>100세</u> -----</p>

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부칙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급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,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